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13 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정희용·서천호·김선교

강승규 • 박덕흠 • 박준태

박충권 • 조지연 • 김성원

백종헌 · 정동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직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기본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을 수립한

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 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"를 "장과 협의를 한 후 제23조에 따른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 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	제4조(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		
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	획의 수립) ①		
장관은 농업・농촌의 공익기능			
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			
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			
기관의 <u>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</u>	<u>장과 협의를 한 후 제</u>		
<u>심의를 거쳐</u> 공익직접지불제도	2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		
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	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		
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	<u>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		
한다.			
	<u>.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		
	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		
	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		
	<u>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</u>		
	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에게		
	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		
	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